『안전투자혁신사업 지입차량(차주) 투자완료 관련 안내』

□ 지입차주란?

☞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지만 차량의 법적 명의가 본인이 아닌 운송업체로 되어 있는 차주

□ 지입차량의 소유권 확인 방법은?

☞ 자동차등록원부(갑부) 현물출자 기재 사항 확인을 통해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 있음을 확인

※ 투자기업의 사업주명과 자동차등록원부(갑부)에 현물출자자명이 동일하게 기재

□ 현물출자를 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?

☞ 운송사업자는 위·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위·수탁 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규정

※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16항 및 제40조3항

□ 현물출자 기재 진행 시기는?

☞ 투자기업은 보조지원 결정된 사업을 완료하고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 이전에 지입차량 현물출자기재 진행

□ 현물출자 기재 진행 방법은?

☞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신청

※ 필요서류: 자동차등록증, 위·수탁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인감증명서 등

□ 투자완료 시 소유주가 불일치하는 경우는?

☞ 투자완료 요청 시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를 확인(현물출자 기재여부)하며, 소유주 불일치 시 1개월 이내 보완(현물출자 기재)기간 부여

☞ 기한 내 보완사항 미개선 시 투자완료 부적합으로 보조금 지급 불가